



2023 관세평가 규정집 정오표

[정오사항]

2023년 11월 2일 기준

무품사 교재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1일 부터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본 교재의 정오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3.8.10.)

주요 개정내용

□ 탁송품 과세운임표 및 적용요건 개정(§24)

- 별표 제1호 제목에서 “특급탁송물품”을 규칙과 동일한 용어인 “탁송품”으로 통일
-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국제특급우편요금 등을 참고하여 개정
-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적용할 때 30kg 초과중량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정(§31)

-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

□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결정(§33)

- 산출대상 품목군 결정의 기준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절차 개선(§34)

- 최초단계에서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에 적용
- 선정단계별 업체수 제한(100개, 30개) 삭제
- 업종 부호의 제공 출처를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업종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업종 부호의 기준 시점 규정

-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이 유사한 규모의 업체 선정 기준 신설
- 제4방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요건 완화 규정 삭제

□ 동종·동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법을 별도 규정(§35)

-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 납세의무자 비율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추가,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비율을 통보하도록 규정

□ 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36)

- 산출대상 품목군별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한 납세의무자 비율의 계산식 규정
-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

□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37)

-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동류 품목번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을 이의제기 대상으로 규정

□ 제6방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39)

- 제6방법에서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선정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

페이지	현행	개정사항	세부설명
17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 ④(생략) 1. ~ 7. (생략) 8. <u>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u> <u>택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u> <u>운임은 별표 제1호의 특급택송화물 과세운임표에 따른다.</u> <u>< 후단 신설 ></u> ⑤ (생략) <u><신설></u>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u>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u> <u>-----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u> <u>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란</u> <u>수입신고할 때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u> <u>서류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u> ⑤ (현행과 같음) <u>제31조(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제4방법으로</u> <u>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1. <u>법 제33조제2항의 경우</u> 2. <u>영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u> <u>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u>	· 문구 수정, 별표 제목을 규칙과 동일하게 “택송품”으로 통일 · 규칙의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의미 명확화 ·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정
26	<u>제33조(동종 · 동류비율 산출)</u> ③ <u>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u> <u>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u> <u>않는다.</u>	3. <u>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u> <u>않는 경우</u> 4. <u>제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u> <u>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u> <u>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u> <u>경우</u>	· (조 · 항 이동) 제33조제3항에서 이동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

24	<u>제31조(제4방법 적용요건)</u> ① (생략)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생략)	<u>제32조(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u>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은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매 신고건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대신에 영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이하 "공제율"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31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26	<u>제33조(동종 · 동류비율 산출)</u> ⑤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	<u>제33조(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u> ① 세관장이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 · 동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결정한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 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 산출대상 품목군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정

26	<u>2.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u>	<u>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u> <u>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u> <u>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u>	·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
26	<u>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u> <u>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의 범위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u> <u>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u>	<u>제34조(비교대상업체의 선정)</u> <u>① 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u> <u>1.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연도에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u>	· (조·항 이동) 제33조제6항에서 이동, 최초 단계에서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 적용, 선정단계별 업체수 제한(100개, 30개) 삭제 -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 조정 근거 마련 · (조·항 이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이동, 업체수 제한 삭제

2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 다만, 납세의무자가 여러 품목군을 취급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산출대상 품목군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대상 품목군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업종,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계 업종

〈신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수입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로서 납세의무자의 업종

나. 가목의 업종,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1.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 금액이 납세의무자의 해당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150 이하인 업체

동 종 · 동 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 품 에 대 한 납세의무자의 연도별 수입금액 × 50%	동 종 · 동 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	동 종 · 동 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 품 에 대 한 납세의무자의 연도별 수입금액 × 150%
--	---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 업종 부호의 출처 변경 및 업종 부호의 기준 시점 규정

·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충족조건

–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이 유사한 업체 선정 기준 신설

26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 보다 많은 업체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u>상품매출원가의 30퍼센트 미만</u>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u>제품매출원가의 10퍼센트 미만</u> 2.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가. 비교대상 후보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3.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판매자로부터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동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다. 1.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업체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30 미만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10 미만 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업체 3.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 (조·항 이동) 제33조제8항에서 이동,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제외조건 · 매출총이익률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수치 제시
----	--	---	--

26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2.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삭제〉	·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선정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제4방법이 아니고 제6방법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39조제3항을 신설하고 동 조항을 삭제
26	<u>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u>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u>제35조(동종·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u> ①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 ----- 경우에는 ----- -----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 조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 (조·항 이동) 제33조제1항에서 이동, 동종·동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법을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별도 조항으로 분리 - 제34조제2항제1호 신설에 따라 다른 납세의무자의 비율을 준용하기 어려움 · (조·항 이동) 제33조제2항에서 이동, 문구 수정

26	<u>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u> ⑩ 세관장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항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2. 제5항제2호의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3. 제7항제2호 각 목의 업종 4. 제7항제3호의 국내판매형태	③ 세관장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3.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 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 (조·항 이동) 제33조제10항에서 이동, 납세의무자의 비율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추가
26	<u>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u> ④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 비율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 (조·항 이동) 제33조제4항에서 이동,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비율 통보
25	<u>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u>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u>제36조(납세의무자 비율 산출)</u> ① 납세의무자 비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납세의무자 비율} = \frac{\text{산출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액의 합} - \text{산출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원가의 합}}{\text{산출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액의 합}}$ 〈삭제〉	· (조 이동) 제32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방법 규정 · 제1항에 따라 중복되어 삭제

25	③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납세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27	<u>제34조(동종 · 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u>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 · 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 · 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동종 · 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세관장이 산출한 동종 · 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u> 2. <u>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u> 3. <u>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u> ③ <u>납세의무자는 제3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u> ④ (생략)	<u>제37조(동종 · 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이를 제35조제4항 ----- -----. 1. <u>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 · 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 · 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u> 2. <u>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34조에서 이동 ·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제2호에 포함하고 동 조항은 삭제 · 제2항에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 조항은 삭제 · (조 · 항 이동) 제34조제4항에서 이동

27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 · 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적정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 · 동류비율이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④ ----- ----- ----- -----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 · 동류 품목번호의 범위 및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산출된 동종 · 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이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 · 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 · 동류비율을 적용한다.	· (조 · 항 이동) 제34조제5항에서 이동 - 문구 수정 · (조 · 항 이동) 제34조제6항에서 이동 - 문구 수정 · (조 · 항 이동) 제34조제7항에서 이동 - 문구 수정
28	제35조(제5방법 적용요건) 수입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38조(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납세의무자가 ----- ----- -----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 (조 이동) 제35조에서 이동 - 조 제목 변경, 문구 수정

30	<u>제36조(제6방법 적용요건)</u> ① <u>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u>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u>범위내에서</u>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u>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39조(제6방법의 적용)</u> ① <u>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u>----- ----- <u>범위 내에서</u> ----- ----- -----. ② ----- <u>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u> -----.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u>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u> 2. <u>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u> 3. <u>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u> 4. <u>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u> 5. <u>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u> 6. <u>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u> 7. <u>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u> 8. <u>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u>	· (조 이동) 제36조에서 이동 - 문구 수정 - 띄어쓰기 수정 · 문구 수정 · 제6방법에서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 완화 대상을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
33/34	<u>제37조·제38조 (생략)</u>	<u>제40조·제41조 (현행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음)</u>	· (조 이동) 제37조·제38조에서 이동

27	<u>제39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u> ① 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9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다. ② ~ ③ (생략)	<u>제4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u> ① ----- ----- ----- ----- <u>제7조의9 제3항에</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39조에서 이동 · 문구 오류 수정
36	<u>제40조 (생략)</u>	<u>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u>	· (조 이동) 제40조에서 이동
36	<u>제41조(사전상담)</u> <u>제40조제1항에</u>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u>제44조(사전상담)</u> <u>제43조제1항에</u> ----- ----- ----- -----.	· (조 이동) 제41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36	<u>제42조(전문가 등의 자문)</u>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u>제40조제1항에</u>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u>제45조(전문가 등의 자문)</u> ① ----- <u>제43조제1항에</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42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36	<u>제43조(심사결과 통보)</u> ① <u>제40조제1항에</u>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영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제46조(심사결과 통보)</u> ① <u>제43조제1항에</u> ----- ----- ----- ----- -----.	· (조 이동) 제43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u>영 제31조제2항·제9항 및 제1항을 준용하며</u>, 제1항의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② ----- ----- ----- ----- <u>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이 고시 같은조 제1항을 준용하며</u>, ----- ----- -----.	· 문구 수정
36	<u>제44조 (생략)</u>	<u>제47조 (현행 제44조와 같음)</u>	· (조 이동) 제44조에서 이동
37	<u>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u> ① ~ ② (생략)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의 반력에 관한 사항은 <u>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u>. 다만, 제40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란 <u>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u>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 ⑤ (생략)	<u>제48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제43조제3항을</u> ----- <u>제43조제3항에서 제51조제3항에</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45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37	<u>제46조(사전상담)</u> ① <u>제45조에</u>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u>제45조제4항의</u>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u>제49조(사전상담)</u> ① <u>제48조에</u> ----- ----- ----- -----. ② <u>제48조제4항의</u> ----- ----- -----.	· (조 이동) 제46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37	<u>제47조(사전심사)</u> ① <u>제45조에</u>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본부세관장은 <u>제45조에</u>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이 영 제31조제6항 및 <u>제40조제3항에</u>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⑩ 관세평가분류원장이 <u>제48조제1항에</u>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해야 한다.	<u>제50조(사전심사)</u> ① <u>제48조에</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48조에</u> ----- ----- <u>제43조제3항에</u> ----- ----- -----.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 <u>제51조제1항에</u> ----- ----- -----.	· (조 이동) 제47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⑪ (생략) ⑫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 사실을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⑪ (현행과 같음) ⑫ ----- 제43조제3항, ----- 제51조제3항 ----- ----- -----.	
38	<u>제48조(사전심사 결과통보)</u>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u>제51조(사전심사 결과통보)</u> ① ----- 제48조에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48조제2항에 ----- ----- ----- ----- ----- -----.	· (조 이동) 제48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38	<u>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u>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제52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u> ① ----- ----- <u>제48조</u>, 제50조 및 제51조에 -----. ②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49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38	<u>제50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u> ① 법 제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47조제11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 연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u>제48조제5항</u>에 따라 교부받은 사전심사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제47조</u>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생략)	<u>제53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u> ① ----- ----- ----- <u>제50조제11항</u>에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51조제5항</u>에 ----- ----- ----- ----- <u>제50조</u> -----. ④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50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4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 ----- ----- 제52조 ----- -----.	
38	제51조·제52조 (생략)	제54조·제55조 (현행 제51조 및 제52조와 같음)	· (조 이동)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이동
38	제53조(준용규정) 제40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제56조(준용규정)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의 ----- ----- --.	· (조 이동) 제53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제54조·제55조 (생략) 제56조(협의회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55조제2항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5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제5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4. (생략) ③ ~ ⑧ (생략)	제57조·제58조 (현행 제54조 및 제55조와 같음) 제59조(협의회회의 운영) ① ----- 제58조제2항의 ----- ----- 제57조제3항에 -----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제2항제1호에 -----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54조 및 제55조에서 이동 · (조 이동) 제56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제57조 (생략)	제60조 (현행 제57조와 같음)	· (조 이동) 제57조에서 이동
	제58조(관세평가자문단) ① (생략)	제61조(관세평가자문단) ①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58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 ----- ----- 제60조를 -----.	
	제5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 기한) ----- ----- 2024년 1월 1일 ----- -----.	· (조 이동) 제59조에서 이동
38	〈신설〉	부칙 〈제2023-50호, 2023.8.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8호 및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별표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 탁 송 품 운 임 , 제 4 방 법 부 터 제6방법까지 개정 규정의 시행일 규정 · 별표 제1호,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개정 규정의 적용례 규정